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40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임종득 · 성일종 · 김예지
김상훈 · 강명구 · 유상범
윤상현 · 김성원 · 이달희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

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격지·오지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응급관리요원 배치기준

마련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3. 그 밖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생략) <u><신 설></u>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u>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격지·오지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제1항에 따른</u>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u>제1항의</u>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u>제2항에 따라</u>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응급관리요원 배치기준</u> 마련 2. <u>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u> 3. 그 밖에 <u>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u> ⑤ ----- <u>제1항 및 제2항의</u>----- ----- ----- ----- -----. ⑥ <u>제1항 및 제2항</u>----- ----- ----- -----.
--	--